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1342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루다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2. 15.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등기계 2019. 5. 1. 접수 제94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3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 9.경에는 C의 D은행에 E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C은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2008. 3. 7.경 대출원리금 합계552,202,4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6406)을 신청하여 2008. 6. 2. 그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이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8453) 사건에서도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20. 4. 28. 기준으로 잔존하는 채무원리금은 770,666,095원(= 원금244,158,718원 + 대지급금 1,027,328원 + 미수손해금 525,480,049원)이다.

라. 한편, B은 2019. 5. 1.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5.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19. 4.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B이 2019. 5. 2.경 매제인 피고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을 빌려 그 돈 중 45,937,25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함으로써 강제경매절차가 취하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9. 5.경 피고가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사정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른 B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중소기업은행의 강제경매절차를 취하게 된 경위와 당시 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사실상 재산가치 있는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채권자들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어려운 고통을 나누고자 실제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B이 원고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9. 5. 1. 접수 제94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별지]

목 록

1. 충남 공주시		답 46㎡
2. 충남 공주시		전 377㎡
3. 충남 공주시		답 982㎡
4. 충남 공주시		대 830㎡
5. 충남 공주시		대 436㎡
6. 충남 공주시		대 31㎡
7. 충남 공주시		임야 283㎡
8. 충남 공주시		임야 1703㎡. 끝.